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429,726,123	42,891,784
일반회계	1,218,586,793	36,557,604
특별회계	211,139,330	6,334,180
공기업특별회계	169,732,081	5,091,96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3,170,279	2,195,10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6,561,802	2,896,854
기타특별회계	41,407,249	1,242,217
주택사업특별회계	67,420	2,023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008,081	240,242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150,000	304,500
교통사업특별회계	19,799,276	593,978
대지보상특별회계	500,000	15,000
수질개선특별회계	2,178,472	65,354

제 2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와 같다.

제 6 조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11,076,04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7년도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14,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